

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

제 5.1 조 목적

이 장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무역을 원활히 하면서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간,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5.2 조 적용범위

이 장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.

제 5.3 조 정의

WTO 협정 부속서 1 가에 포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(이하 “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”이라 한다) 부속서 가의 정의는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장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.

제 5.4 조 일반규정

양 당사국은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의 관련 결정과 국제표준,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하여,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양국의 권리 및 의

무를 재확인한다.

제 5.5 조

위험평가

1.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제5조와 무관하게,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위험평가 요청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노력한다.
2.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위험평가는 각 당사국의 관련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고 평가된다. 위험평가는 이 장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규정을 따를 것이다.

제 5.6 조

지역화

양 당사국은 병해충 안전지역을 포함한 지역적 조건의 개념을 인정하고,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의 관련 결정과 국제표준,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한다.

제 5.7 조

동등성

1. 각 당사국은, 수출 당사국이 자국의 조치가 다른 쪽 당사국의 적절한 보호 수준을 달성함을 다른 쪽 당사국에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, 다른 쪽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자국의 조치와 동등한 것으로 수용한다. 이러한 목적상, 요청에 따라, 검사, 시험 및 그밖의 관련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수입 당사국에 부여된다.
2. 동등성은 다음과 관련하여 인정될 수 있다.
 - 가. 개별 조치

나. 조치들의 집합, 또는

다. 분야, 하위 분야, 상품 또는 상품군에 적용 가능한 제도

3. 동등성의 인정에 관하여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상호 합의된 절차를 따른다. 이 절차는 수출 당사국에 의한 동등성의 객관적인 입증과 수입 당사국에 의한 그 요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포함한다. 이 평가는 검사 또는 검증을 포함할 수 있다.

4. 이 조 제 2 항에 규정된 동등성의 인정에 관한 수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,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합의된 단계를 포함하는 협의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개시한다.

제 5.8 조 투명성 및 정보교환

1.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그 적용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, 무역에 적용 가능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관련하여 투명성을 추구한다.

2. 양 당사국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,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및 적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.

3. 수출 당사국은 그 수출 당사국에서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물 또는 식물 건강 상태의 중대한 변화 또는 식품 안전 문제가 있는 경우, 수입 당사국에 시의적절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.

제 5.9 조 기술 협력

1.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규제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양자 무역에 미치는

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, 위생 및 식물위생 분야의 기술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합의한다.

2. 각 당사국은 요청에 따라, 연락처를 통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문제와 관련된 협력을 적절히 고려하고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한 협의를 강화한다.

제 5.10 조

연락처

양 당사국은 이 조의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한 이행 및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, 다음과 같이 연락처를 지정한다.

가. 한국의 경우, 농림축산식품부, 그리고

나. 조지아의 경우, 환경보호농업부

제 5.11 조

분쟁해결

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 16 장(분쟁해결)을 이용하지 않는다.